

[별표 2]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(민간투자기본계획 §64 ①항)

1. 기본 유형

분 야	시 설
도로	유료 도로, 유료 터널, 유료 교량, 노외주차장, 제1종 시설물 교량·터널 신설 유형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
철도	철도, 도시철도, 철도시설
항만·공항	항만시설, 공항시설
수자원	수도 및 중수도
환경	하수도, 공공하수처리시설, 분뇨처리시설, 하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, 폐기물처리시설, 폐수종말처리시설, 재활용시설
생활SOC 등	어린이집, 유치원·학교, 도서관, 미술관, 과학관, 박물관, 생활(전문) 체육시설

2. 그 밖의 민간투자 검토 대상 유형

-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§2조 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투자비 회수 등을 위해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기타 시설